

행정안정부

시정요구

제 목 과장급(시·도 4급, 시·군·구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기 관 명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원에 부합하게 현원을 배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일(25.5.2.) 현재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의 과장급(시·도 4급, 시·군·구 5급) 이상 직위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점검한 결과, 정·현원 간 직렬 불일치 등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위반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고흥군수, 화순군수, 강진군수, 영암군수, 함평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직위에 대하여 정원 재책정 또는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 배치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과장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사례 >

자치단체	직위	정원	현원	비고
여수시	주차차량과장	행정·시설 5급	공업 5급	
	동문동장	행정·사회복지·간호·시설 5급	보건 5급	
	광림동장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5급	보건 5급	
	묘도동장	행정·공업·환경·방송통신 5급	시설 5급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위반(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기 관 명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일(25. 5. 2.) 현재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의 복수직렬에 대한 담당업무 확인 결과, 일부 자치단체는 해당 업무 성격과는 관련이 없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책정하는 등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함평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업무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해당 복수직렬 정원을 조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수직렬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사례 >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여주시	감사담당관	행정· <u>사회복지</u> 7급	행정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재산등록관리 •예산,회계 •자체감사요원등
		행정· <u>사회복지</u> 7급	행정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 일반사무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청백e시스템 운영 및 관리
	문화유산과	행정· <u>사서</u> 7급	행정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 일반사무 •청사관리 및 물품 수급 관리 •문화유산구역 통계관리
	교통과	행정· <u>세무</u> 7급	행정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여객 불친절 및 교통불편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여객운송종사자 자격 미준수 및 적성정밀검사 미준수자 관리
	주차차량과	행정· <u>세무</u> 8급	행정 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계 사업의 등록 •건설기계 정기검사 업무 및 정비명령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확인 지도점검
	도로과	행정· <u>전산·공업</u> 8급	행정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행정 소송업무 추진 •도로개설 미지급 용지 보상 •도로개설 손실보상업무 추진
	수도행정과	행정·세무· <u>전산</u> 6급	전산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요금조정계획 수립 •상수도요금조정 조례개정 등
		행정·세무· <u>전산</u> 7급	행정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경영평가 •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배정 관리 •수도행정과 일상경비 및 물품관리
		행정· <u>전산</u> 8급	행정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도과 소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용역 등 계약 - 정기·수시 하자검사 계획수립및시행
		행정·세무· <u>전산</u> 8급	행정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과사무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단 운영 종합계획수립 및시행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행정· <u>전산·방송통신</u> 9급		행정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지출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지출업무 •재무회계 결산업무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여주시	홍보담당관	공업· <u>전기운영·기계운영</u> 8급	공업 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홍보 영상 촬영 및 기록 보존·관리 •방송 언론사, 부서 등 영상 제공 •시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관리
	총무과	행정·세무· <u>사회복지·시설</u> 6급	행정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주시 체육회 행정 지원
		행정· <u>전산·사서</u> 6급, <u>기록연구사</u>	행정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선거 및 주민투표사무 종합관리 •시장·부시장 관련 회의 및 부재 시 업무 •주민자치 운영·지원
		행정· <u>사회복지·공업·시설</u> 7급	행정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 운영 계획 수립 •상시학습 및 교육 통계 관리 •자체교육(멘토링, 워크숍, 직무교육)운영
	문화유산과	행정· <u>전산·시설</u> 8급	시설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추진 •문화유산 구역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문화유산 부대시설 관리
	교통과	행정· <u>전산·공업</u> 6급	행정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수지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운수지도·점검 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시책 홍보 및 언론보도 작성
	교통과	행정· <u>전산·공업·방송통신</u> 9급	행정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관련 사항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관련 업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주차차량과	행정· <u>전산·공업·시설</u> 6급	행정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정차 의견진술, 이의신청 처리 •신속민원처리(과태료 및 단속 관련등) •특별회계 각종 지출업무(급여,수당 등) 	

행 정 안 전 부

주의요구

제 목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 절차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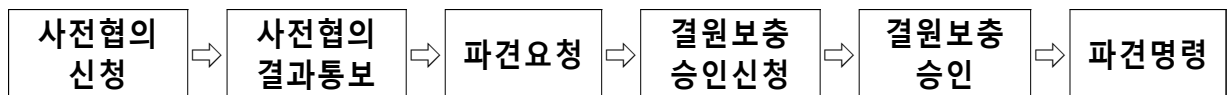
기 관 명 여수시, 함평군, 신안군

내 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는 ‘조직관리지침’에서는 직무파견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이후 파견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년~)

< 결원보충 승인절차(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



그러나 감사대상 기간 중(21년~현재)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의 결원보충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결원보충 승인 이전에 파견명령을 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결원보충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위반 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여수시장, 함평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직무파견 및 결원보충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붙임】

< 결원보충 승인절차 부적정 사례 >

자치단체	파견기관	직급	파견기간		결원보충 승인일	파견명령일 (인사명령일)
			부터	까지		
여주시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행정5급	2024-01-09	2025-01-08	2024-01-08	2024-01-05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행정5급	2024-01-09	2025-01-08	2024-01-08	2024-01-05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행정5급	2024-01-09	2025-01-08	2024-01-08	2024-01-05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행정6급	2024-01-09	2025-01-08	2024-01-08	2024-01-05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행정7급	2024-01-09	2025-01-08	2024-01-08	2024-01-05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행정7급	2024-01-09	2025-01-08	2024-01-08	2024-01-05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행정7급	2024-01-09	2025-01-08	2024-01-08	2024-01-05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6급	2024-01-10	2025-01-09	2024-01-08	2024-01-05
	한국산업단지공단	행정5급	2024-01-10	2025-01-09	2024-01-08	2024-01-05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업6급	2024-01-10	2025-01-09	2024-01-08	2024-01-05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행정6급	2024-01-10	2025-01-09	2024-01-08	2024-01-05
	국민권익위원회	행정5급	2024-01-10	2025-01-09	2024-01-08	2024-01-05
	전라남도	행정5급	2024-01-10	2025-01-09	2024-01-08	2024-01-05
	전라남도	행정6급	2024-01-10	2025-01-09	2024-01-08	2024-01-05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제 목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등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되며,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월~)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16~24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시·도로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기능,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 등을 자체 검토 후 폐지, 통폐합 또는 협의체 전환 등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123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속한 정비(조례·규칙 개정 등)가 필요하다. (미흡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
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통폐합 등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입의)	조례 등	
여수시	<p>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p>			○	15
	<p>교육발전협의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p>			○	10
	<p>도시재생위원회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p>			○	21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입의)	조례 등	
여수시	<p>유통분쟁조정위원회</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p>			○	11
	<p>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p> <p>제9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p>			○	10
	<p>지역경제협의회</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주요현안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p>			○	20
	<p>지역돌봄협의체</p> <p>제9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p>			○	11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제 목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미흡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용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같은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대상·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9년)을 통해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매년 12월)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조직을 운영토록 안내한 바 있다.

❖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기구정원 규정」 제40조 및 '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편집) 등)

-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 ⑧ 중기기본 인력계획
- ⑨ 자문기관 운영 현황

그러나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기구정원 운영현황 및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일부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위반사항 : 붙임)

이에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보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내실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

< 기구 및 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위반여부 확인 >

구 분	여수시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21.10.28. 22.11.28. 23.12.01. 24.11.21.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21.11.25. 22.10.27. 23.12.01. 24.05.29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21.10.28. 22.11.28. 23.12.01. 24. 11.21.
④ 행정안전부 조직 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11.21.

구 분
⑤ 한시기구·한시정 원 현황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⑧ 중기기본 인력계획
⑨ 자문기관 운영현황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

여수시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3.12.01.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10.28. '22.11.28. '23.12.01. '24.11.21.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